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내용 삭제 〉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26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내용 삭제	3
2. 설립·통합·해산 타당성 검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15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임원	19
4. 비밀 유지의 의무	25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26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7. 3.
- (3) 회 부 일 : 2025. 7.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절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5조의2 삭제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내용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제명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목적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며(안 제1조 및 제4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u>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사회서비스</u> <u>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u> <u>운영에 관한 사항</u> 등을 정함으 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 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 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u> <u>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u>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u>법률</u> 제1조(목적) -----<u>사회서비스</u> <u>원</u>----- ----- -----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u>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u> <u>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u>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충하고, 민간 사회서비
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
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
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
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
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공공성등”이라 한다)과 그 질
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
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의2.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삭 제>

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
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
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
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
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
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
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
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삭 제>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
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
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
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2024년 7월 25일에 발의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47)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제정안은 현행법의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법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수정·삭제되는 규정과 제정안의 비교 >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사회서비스의</u>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이하 “공공성등”이라 한다)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u>국공립</u>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u>민간</u>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성·전문성·투명성·<u>창의성·다양성</u> 등 (이하 “공공성 등”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u>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u>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u>발전 및</u>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2에 따른 <u>사회서비스 실태조사</u>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의2. <u>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u>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그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지원 <u>및 진흥</u>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실태 파악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및 실행 방안 4.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5.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6.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 방안 7.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개선 방안 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평가 및 개선 방안 9. <u>사회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지원 방안</u>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9.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10. 사회서비스 분야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u>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④ <u>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조사·연구, 인력 통계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u>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한다. 제5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생애주기별·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계획 및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동일한 내용을 서로 다른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법 해석 및 집행 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단순히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부 내용을 추가로 삭제·수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민간이 운영하는 동일한 분야의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것에 더하여, 민간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시도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일종의 기준으로 삼아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가 이보다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단순히 삭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간 분야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본계획의 내용 중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¹⁾되어 2025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²⁾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는 단순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어 세부 지역별

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83)

2) 2023년 기준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대비 이용자 수를 비교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시설 1개당 이용자가 55명인 반면, 인천광역시 8명으로 나타남. (p.28 참고)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해당 규정이 시행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설립·통합·해산 타당성 검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통합·해산하려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통합·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u>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u>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u>한다</u> .	제9조(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따라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u> ----- ----- <u>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통합·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현행법 제7조³⁾에 따른 특수법인이며, 동시에 지방출연기관의 성격⁴⁾을 지니고 있음.

제9조⁵⁾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통합·해산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⁶⁾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그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타당성 검토 이전에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타당성 검토를 거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

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준용한다.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시·도 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도지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하거나 이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서비스원을 설립·통합·해산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이하 각 호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⁷⁾에서 시·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이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9조제2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통합·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추가로 규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어느 정도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음.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결과가 시·도 사회 서비스원의 설립·해산·통합 여부를 구속하는지에 대하여 논의⁸⁾가 있었다는 점에서,

타당성 검토 이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제4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41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8.22.), 제418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할 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및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⁹⁾하는 것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전국 단위에서 유기적·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9)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시·도서비스원 설립·통합·해산 협의) ①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5. 설립 후 5년간의 시·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도서비스원 통합·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도서비스원 통합·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통합·해산 사유
2.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3.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및 임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의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안 제10조제3항 신설), 사업 적정성에 대한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고(안 제27조제2항 삭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계 구축을 추가하며(안 제32조제1호 및 제3호),

추천 대상이 되는 임원 후보자에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원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① ----- -----. 1.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신 설>

6. ~ 10. (생략)

② (생략)

<신 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시·
도 서비스원에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후보자 추천과 제17조
에 따른 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 ③ (생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
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단서 신설>

운영 · 관리

2. ~ 5. (현행과 같음)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
관의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사
업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
원(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임원으로 선
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후
보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다만, 「교육공무원
법」에 따른 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 략)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② <u>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라 <u>시·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u>지원·관리 및 평가</u> 등에 관한 사무 2. (생 략) 3. 사회서비스 <u>수급계획</u>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조사·<u>개발</u> 4. ~ 9.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32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 -----. 1. ----- -----<u>관리·평가 및 교육</u>----- ----- 2. (현행과 같음) 3. -----<u>수급계획</u>,----- ----- -----<u>개발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계 구축</u> 4. ~ 9.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은 법 제10조제2항¹⁰⁾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률보다 탄력적인 규율이 가능한 대통령령을 통해 사업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법률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의 사회서비스 개발·확산 등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계 구축’을 추가하고 있는데,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¹¹⁾에서, 직접적인 사회서비스

1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② 그 밖에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상황

1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시·도 서비스원의 책임) 시·도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할 때 사회서비스의 공공성등과 그 질을 향상하고 관할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중앙 사회서비스원 역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관련 업무와 기초자료로서 사회서비스에 관한 통계 등을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¹²⁾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대하여, 균형잡힌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① 시·도 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② 시·도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시·도 및 시·도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업무 관련 공무원

④ 그 밖에 시·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한편, 개정안은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임원¹³⁾으로 선임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을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제16조¹⁴⁾의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시·도의 조례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정관¹⁵⁾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시·도지사의 임명권을 저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조례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¹⁶⁾’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1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임원) ① 시·도 서비스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1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원장을 포함한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서비스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③ 시·도 서비스원의 이사는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도 서비스원의 임원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② 시·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유사입법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의 선임) ③ 이사(이사는 제외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원장이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4. 비밀 유지의 의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안 제44조의2 신설),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5조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4조의2(비밀 유지의 의무)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u>제45조(벌칙)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45조(과태료) (생략)</u>	<u>제46조(과태료) (현행 제45조와 같음)</u>

나. 검토의견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앙 사회서비스원도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자문 및 지원과 더불어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은 사회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은 시·도 서비스원 또는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처한 위기상황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서 타인에게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체적인 재무 상황이나 내부 정보 역시 권한과 책임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이와 유사한 취지로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적절한 벌칙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에서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18)에서도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으로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를 다른 법률에 비해 더 강하게 부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에서 벌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8(비밀누설 등의 금지) 자활복지개발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제1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7조를 위반한 자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결 시,
이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1】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 및 이용자 수 (2023년 12월 기준)

□ 사회복지시설 수

구분(설립주체별)	노인시설(개)	장애인시설(개)	아동시설(개)	총 시설(개)
강원특별자치도	901	1,090	141	2,132
경기도	5,095	10,280	690	16,065
경상남도	1,281	2,280	240	3,801
경상북도	1,326	1,689	233	3,248
광주광역시	639	1,269	136	2,044
대구광역시	882	1,344	124	2,350
대전광역시	510	1,129	166	1,805
부산광역시	918	1,778	168	2,864
서울특별시	2,539	5,295	511	8,345
세종특별자치시	79	340	18	437
인천광역시	1,201	1,908	137	3,246
전라남도	1,043	1,440	173	2,656
전라북도	967	1,358	168	2,493
제주특별자치도	209	512	98	819
충청남도	1,016	1,758	130	2,904
충청북도	768	1,196	169	2,133
총합계	19,687	35,385	3,386	58,458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

구분(설립주체별)	노인시설(명)		아동시설(명)		장애인시설(명)		전체(명)	
	생활인원	입소정원	생활인원	입소정원	생활인원	입소정원	생활인원	입소정원
강원특별자치도	11,149	27,274	30,743	49,412	1,539	2,429	43,431	79,115
경기도	77,772	268,592	314,268	448,377	7,448	30,082	399,488	747,051
경상남도	14,536	33,191	60,405	98,633	2,494	4,982	77,435	136,806
경상북도	16,073	46,677	43,986	75,249	2,842	6,263	62,901	128,189
광주광역시	3,317	33,647	29,422	52,983	1,521	2,034	34,260	88,664
대구광역시	8,791	23,194	39,891	63,751	1,987	2,960	50,669	89,905
대전광역시	8,409	16,241	26,489	42,008	1,765	3,492	36,663	61,741
부산광역시	6,581	34,543	51,892	79,960	1,737	5,241	60,210	119,744
서울특별시	19,572	114,456	157,537	235,381	3,616	18,496	180,725	368,333
세종특별자치시	793	2,656	14,154	19,249	213	291	15,160	22,196
울산광역시	2,351	11,137	22,649	32,216	1,139	3,329	26,139	46,682
인천광역시	18,017	40,084	60,722	85,599	1,219	2,622	79,958	128,305
전라남도	10,598	29,452	36,528	65,750	1,504	4,711	48,630	99,913
전라북도	11,244	35,983	32,402	58,123	1,920	5,265	45,566	99,371
제주특별자치도	3,487	6,644	19,422	27,605	1,092	2,704	24,001	36,953
충청남도	13,140	52,953	49,553	78,842	1,751	6,128	64,444	137,923
충청북도	11,097	23,724	36,461	59,038	2,097	3,957	49,655	86,719
총합계	236,927	800,448	1,026,524	1,572,176	35,884	104,986	1,299,335	2,477,610

(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육통계)

<참고>

- 노인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 등 제공시설),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지역 종합 노인복지시설)
-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 장애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의료재활시설